제302회 정례회 2011. 7. 22.(금)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7. 22.(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도경 의원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1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11년 7월 7일

다. 상정일자 : 2011년 7월 18일

-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등 관계법령에서 일부를 지원 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도지사 책무(안 제3조)
-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안 제4조)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5조)
 - 장애인 돌봄, 인식개선, 교육, 사례관리, 상담지원, 역량강화 등
- 장애인가족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는 자문기구 활용 규정(안 제6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 홍범희)

- 지속적인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수의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의 문제를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가족 전체를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욕구와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 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3. "장애인가족 지원" 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 2. 장애인가족 지원의 정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장애인가족의 돌봄 지원 사항
 - 2.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가족의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문기구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장애인복지 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 3. 안정된 주거생활
 -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 재정요인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비

○ 비용추계 내용 (개소당) (단위 : 천원)

사 업 명	소 요 액	비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250,000	센터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사례관리사 교육	10,000	센터 근무 사례관리사 교육
홍보사업비	5,000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 등
장애인가족 욕구조사	10,000	사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합 계	275,000	

2. 재원조달 방안

○ 국비, 지방비 : 지방비 우선 부담

○ 충북도와 시군 분담비율 : 도(50), 시군(50)